제목	문의 외부인건비 관련 문의
등록일	2013.08.13
질문내용	안녕하세요~기업부설연구소의 위촉연구원 인건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.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5항 별표2의 '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'을 보면, 직접비의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(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업 부담분 포함)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고 되어있습니다. 또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(2012.11), 제3장 비목별 연구계발비 계상, 사용의 직접비(인건비) 항목을 보면,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복리후생비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이를 해석하면,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5항 별표2의 인건비의 급여총액(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업 부담분 포함)이 단지 급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, 복리후생성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<질의사항> 1. 우리 기관의 위촉연구원 급여기준에 급여성 경비뿐만 아니라, 상기의 복리후생성 경비를 내부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면, 이는 국가R&D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요? 2. 우리 기관에는 위촉연구원 뿐 아니라,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 경우 기관 내 다른 기간제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복지후생 관련 논의는 계속 발생될 것으로 여겨지는데, 직접비나 간접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?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신속성 있는 답변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답변내용	안녕하세요. 해당 문의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. '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(2013.03.23. 시행)' [별표2] "인건비 사용용도: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·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인건비 계상기준: 1. 소속기관(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)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(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)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."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 계상할 때에는 '소속기관의 급여기준'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 그러나 동 규정에서는 문의주신 바와 같이 '복리후생성 경비'의 인건비 포함여부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. 이에 문의주신 '복리후생성 경비'의 포함여부는 부처별 규정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답변에 만족하시나요? 만족도 평가 참여인원 : 0명 | 평점 : 0.0점

◯매우만족 ★★★★★ ◯만족 ★★★★☆ ◉보통 ★★★☆☆ ◯불만족 ★★☆☆☆ ◯매우불만족 ★☆☆☆☆ 확인

> 목록

COPYRIGHT(C) Ministry of Science, Ict & future Planning. ALL RIGHTS RESERVED.

R&D관련부처 바로가기 이동
전문기관 바로가기 이동
관련기관 바로가기 이동